

## 과태료 범칙금 차이

과태료와 범칙금은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, 그 성격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.

### 과태료의 정의와 특징

과태료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<sup>[1]</sup>. 주요 특징은:

- 형법상 형벌이 아니므로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<sup>[1]</sup>
- 행정법에 따라 부과되며,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<sup>[2]</sup>
- 일반적으로 고지서 형태로 부과되며,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<sup>[2]</sup>

### 범칙금의 정의와 특징

범칙금은 형사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, 주로 교통법규 위반에 적용됩니다<sup>[2]</sup>. 주요 특징은:

-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, 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<sup>[2]</sup>
-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<sup>[2]</sup>
-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부과됩니다<sup>[3]</sup>

### 주요 차이점

#### 법적 근거와 성격:

- 과태료: 행정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
- 범칙금: 형사법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로,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중간적 성격<sup>[4]</sup>

#### 부과 주체:

- 과태료: 행정청(지방자치단체, 관할 구청 등)이 부과
- 범칙금: 주로 경찰이 부과<sup>[3]</sup>

#### 적용 사례:

##### 과태료 사례:

- 불법 주차<sup>[5]</sup>
- 쓰레기 무단 투기<sup>[5]</sup>
- 임대 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<sup>[6]</sup>
-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<sup>[6]</sup>

범칙금 사례:

- 신호 위반<sup>[5]</sup>
- 속도 위반<sup>[5]</sup>
- 음주 운전<sup>[2]</sup>

납부 절차:

- 과태료: 고지서를 통해 납부
- 범칙금: 경찰이 발급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납부<sup>[4]</sup>

미납 시 조치:

- 범칙금: 미납 시 20% 가산금이 부과되며,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.<sup>[4]</sup>

## 이의신청 방법

과태료 이의신청:

-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가능
- 이의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<sup>[2]</sup>

범칙금 이의신청:

-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,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음
-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됨<sup>[2]</sup>



#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절차는 어떻게 다른지

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지만, 그 부과 절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

## 과태료 부과 절차

### 1.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

- 행정청은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먼저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사전통지를 합니다.<sup>[7]</sup>
- 사전통지 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며,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<sup>[8]</sup>
- 이 기간 내에 자진납부 시 20% 감경 혜택이 제공됩니다.<sup>[9] [8]</sup>

### 2. 본 통지서 발송

-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<sup>[8]</sup>
- 납부기한은 60일이며,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<sup>[8]</sup>

### 3. 이의신청 및 법원 절차

-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.<sup>[10]</sup>

- 이의신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.<sup>[10]</sup>
-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.<sup>[7] [10]</sup>
- 법원은 서류 심사 후 약식결정을 내리며, 이에 불복 시 1주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.<sup>[7]</sup>

## 범칙금 부과 절차

### 1. 현장 단속 및 통고처분

- 주로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급합니다
- 통고처분 형태로 이루어지며,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부과됩니다

### 2. 납부 기한

- 범칙금은 통상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
- 2차 납부기한이 만료된 후 5일이 지나도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.<sup>[11]</sup>

### 3. 이의신청

-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에 할 수 있습니다.<sup>[12]</sup>
- 이의신청 시 민원내용을 작성하고 관할관서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.<sup>[12]</sup>

## 주요 차이점

### 1. 부과 주체

- 과태료: 행정청(시, 군, 구청 등)이 부과합니다.<sup>[8]</sup>
- 범칙금: 주로 경찰이 부과합니다

### 2. 절차적 보장

- 과태료: 사전통지, 의견제출,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됩니다.<sup>[7] [8]</sup>
- 범칙금: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로 진행됩니다

### 3. 미납 시 조치

- 과태료: 납부기한 경과 시 3%의 가산금과 매월 1.2%의 증가산금(최대 60개월)이 부과됩니다.<sup>[8]</sup>
- 범칙금: 미납 시 20% 가산금이 부과되며,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

### 4. 이의신청 절차

- 과태료: 행정청에 이의신청 후 법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.<sup>[7] [10]</sup>
- 범칙금: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<sup>[12]</sup>

#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되지

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은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.

## 주요 위반 행위별 금액 차이

### 신호위반의 경우:

- 과태료: 승용차 기준 7만원 (벌점 없음)<sup>[13] [14]</sup>
- 범칙금: 승용차 기준 6만원 (벌점 15점 또는 16점)<sup>[13] [14]</sup>

### 속도위반의 경우 (승용차 기준):

- 20km/h 이하 초과:
  - 과태료: 4만원<sup>[15]</sup>
  - 범칙금: 별도 명시되지 않음
- 20km/h 초과 ~ 40km/h 이하:
  - 과태료: 7만원<sup>[15]</sup>
  - 범칙금: 별도 명시되지 않음
- 40km/h 초과 ~ 60km/h 이하:
  - 과태료: 10만원<sup>[15]</sup>
  - 범칙금: 별도 명시되지 않음
- 60km/h 초과:
  - 과태료: 13만원<sup>[15]</sup>
  - 범칙금: 별도 명시되지 않음

### 주정차 위반의 경우 (승용차, 4톤 이하 화물차):

- 일반구역: 4만원<sup>[16]</sup>
- 소방시설·노인보호구역: 8만원<sup>[16]</sup>
- 어린이보호구역: 12만원<sup>[16]</sup>

## 금액 차이의 의미

일반적으로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약간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이고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<sup>[14]</sup>. 그러나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,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<sup>[13] [14]</sup>.

따라서 금액만 보면 과태료가 약간 더 비싸지만, 벌점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<sup>[13] [14]</sup>.

## 미납 시 추가 비용

두 제도 모두 미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:

- 과태료: 첫 달 3% 가산금, 이후 매월 1.2%의 증가산금(최대 60개월)<sup>[15]</sup>
- 범칙금: 미납 시 20% 가산금이 부과되며, 계속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<sup>[13]</sup>

✻

1. <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과태료>
2. <https://www.eacar.co.kr/article/223598519444>
3. <http://www.moleg.go.kr/knowledge/publication/monthlyPublicationSrch?mpbLegPstSeq=130876>
4. [http://www.goodpns.com/reference/traffic/admin/admin\\_05\\_01.htm](http://www.goodpns.com/reference/traffic/admin/admin_05_01.htm)
5. <https://emcnd.mycafe24.com/뉴스/기획-칼럼/5998/>
6. <https://korla.or.kr/117/?bmode=view&idx=5974503>
7. <https://blog.naver.com/mgoodjoe/223088847530>
8. [https://www.ansan.go.kr/danwongu/common/cntnts/selectContents.do?cntnts\\_id=C0000356](https://www.ansan.go.kr/danwongu/common/cntnts/selectContents.do?cntnts_id=C0000356)
9. [https://www.rfine.go.kr/sub03/egovSub03\\_01\\_01.do](https://www.rfine.go.kr/sub03/egovSub03_01_01.do)
10. <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IsMain.laf?csmSeq=618&ccfNo=4&cciNo=1&cnpCIsNo=1>
11. [https://www.rfine.go.kr/sub01/egovSub01\\_01\\_01.do](https://www.rfine.go.kr/sub01/egovSub01_01_01.do)
12. <https://www.efine.go.kr/notification/help/helpPop.do?contentType=050201&contentUrl=civilAppealViolList>
13. <http://m.sh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4420>
14. <https://www.socialfocu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050>
15. <https://www.efine.go.kr/notification/help/helpPop.do?contentType=910100>
16. <https://www.gunpo.go.kr/www/contents.do?key=4590>